

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54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6월 14일
제출자 : 자치행정위원회

1. 수정이유

가. 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2호 중 장애인과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용료 감경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높이고 남양주 시민과 교류시민에 대한 감경비율은 원안대로 100분의 30으로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안 제4조 제1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신설(붙임 참조)
- 나. 장애인과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 사용료 100분의 50 감경
- 다. 남양주시 또는 교류도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사용료 100분의 30 감경
- 라. 수정한 부분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개정한다.

3. 수정안 전문 : 붙임

4.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붙임

남양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

제4조 제1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100분의 50 감경

- 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
- 다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라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마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바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
3. 100분의 30 감경

- 가. 남양주시 또는 교류도시에 주소를 둔 사람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	변 안(최종)
<p>제4조(사용료의 감면) (생 략) <u>2. 100분의 30 감경</u> 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다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사. 남양주시 또는 교류도시에 주소를 둔 사람</p> <p><신 설></p>	<p>제4조(사용료의 감면) (생 략) <u>2. 100분의 50 감경</u> 가. ~ 바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사. 삭 제</p> <p><u>3. 100분의 20 감경</u> 가. 남양주시 또는 교류도시에 주소를 둔 사람</p>	<p>제4조(사용료의 감면) (생 략) <u>2. 100분의 50 감경</u> 가. ~ 바. (수정안과 같음)</p> <p>사. (수정안과 같음)</p> <p><u>3. 100분의 30 감경</u> 가. 남양주시 또는 교류도시에 주소를 둔 사람</p>